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王旨)의 진위(眞僞) 고찰

박성호

서울역사박물관 고문서담당, 한국고문서 전공

travis@krpost.net

I. 머리말

II.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 현황

III. 왕지의 진위 판단 기준

IV. 진위 검토

V. 맷음말

I. 머리말

국내에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고문서의 절대 다수는 조선 중·후기에 작성된 것들이다. 상대적으로 조선전기 이전에 작성된 고문서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아 고문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있으며, 특히 공문서의 경우 『경국대전』의 문서 규식이 적용되기 이전의 문서 양식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공문서 양식은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문서를 통해 당시의 국가제도, 문서행정 등의 일면을 실증해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 시기 공문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편찬된 수권의 자료집과 연구서를 통해 알려져 있고¹⁾, 최근 들어 이 시기의 문서에 대한 개별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향후 진행될 논의가 주목된다.

필자는 『경국대전』 문서 규식이 적용되기 이전에 작성된 왕명문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문서에 대한 목록 작업과 진위 판단을 다시 진행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그 존재가 알려진 왕지(王旨)²⁾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왕지는 그 현황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일부 왕지의 경우는 엄밀한 자료 비판 없이 그 존재 자체만을 근거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발간된 책자, 언론 보도자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진 왕지를 최대한 수집하여 목록을 제시한 뒤 왕지의 진위 판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 왕지에 대한 진위 검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 이기백(1987)과 허홍식(1988)이 각각 고려에서 조선초기까지의 공·사문서를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최승희(1898)가 조선시대 국왕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를 하였으며, 정구복 외(1997)에서 15세기 공·사문서 대부분을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노명호 외(2000)에서는 기존의 자료집과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오탈자를 바로잡고 주제별 연구 성과를 부가하였으며, 박성종(2006)은 앞선 일련의 성과물을 토대로 조선초기 공·사문서의 이두문(吏讀文) 해독에 주안점을 둔 역주서를 발간하였다.

2) 고문서 분류상 왕지(王旨)라는 명칭은 문서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당시 법제와 문서의 발급 용도에 따라 고신(告身), 홍폐(紅牌), 사패(賜牌)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상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문서의 첫머리에 ‘王旨’라고 적혀 있는 문서를 일괄 왕지라고 지칭한다.

II.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 현황

선행조사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왕지와 필자의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전하는 왕지는 총 60점으로 확인되었다.³⁾ 이 가운데는 기준의 자료집이나 논문에서 소개되지 않은 것도 네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1401년(태종 1) 노혁(盧革) 왕지, 1427년(세종 9) 맹사성(孟思誠) 왕지, 1428년(세종 10) 배담(裊溝) 왕지, 1432년(세종 14) 김길통(金吉通) 왕지가 그것이다. 노혁 왕지는 2009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개최한 「공주의 명가」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었고, 맹사성 왕지는 신경(申曠)의 문집인 『직암집(直庵集)』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배담 왕지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중에서 확인하였고, 김길통 왕지는 유척기(兪拓基)의 문집인 『지수재집(知守齋集)』에 수록되어 있었다.

왕지의 전체적인 현황은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문집이나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전재본(轉載本)을 별도로 분리해놓은 이유는 전재본 자체만으로는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재본은 자료의 성격상 원본 고문서가 아니라 이미 원래 문서 형태를 잃어버린 2차 자료여서, 엄밀히 말해 고문서의 진위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재본과 원본·사본을 구분하여 문서 발급 연대 순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1. 전재본

필자가 전재본으로 구분한 자료는 족보, 문집 등에 수록된 2차 자료를 말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재본 왕지 목록은 표1과 같다.

일반적으로 전재본 형태로 남아 있는 고문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 A. 전재 당시 원본 문서를 토대로 해당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 B. 원문서의 존재 여부는 불확실하나 해당 인물의 관력(官歷)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경우

3) 본 논문에서 다루는 왕지는 소장자(처)가 공개된 경우와 문집, 족보 등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소장자의 공개에 따라 원본 왕지가 추가될 수 있으며, 문집이나 족보 등에 수록된 전재본도 더 발견될 수 있다.

A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이은, 이아, 맹사성, 김길통 왕지의 경우이다. ‘이은 왕지’는 족보에 4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4점 가운데 1점은 현재 문서 형태로 후손가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점도 원문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⁵⁾ ‘이아 왕지’ 또한 족보에 수록되어 있으며, ‘千戶公職牒謄書’라는 제목 아래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⁶⁾ ‘맹사성 왕지’는 신경(1696-?)이 지은 「書孟文貞公大拜王旨後」에 왕지의 내용과 보인(寶印)까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발급 당시의 연호만 적혀 있고 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⁷⁾, 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1427년 (세종 9) 1월에 맹사성이 우의정에 제수된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1-전재본 목록

연번	연도(서력, 왕력)	월	문서명	크기(cm)	인문	도판 ⁴⁾	비고
1	1339	충숙왕복8	1	金天富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2	1397	태조6	4	李 殷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3	1401	태종1	8	金冲漢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4	1407	태종7	8	李 殷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5	1414	태종14	12	李 雅 왕지(告身)	미상	미상	[평] 족보
6	1416	태종16	6	石汝明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7	1417	태종17	6	李 殷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족보
8	(1427)	(세종9)	1	孟思誠 왕지(告身)	미상	(조선국왕지인)	[직] 문집
9	1432	세종14	4	金吉通 왕지(紅牌)	미상	(조선국왕지인)	[직] 문집

- 4) 도판 출처는 도판 상태가 양호한 출처를 표기하였고, 편의상 약칭한다. [고]:고려시대기록문화(남권희), [공]:공주의명가(국립공주박물관), [국]:국가기록유산, [국편]:국사편찬위원회, [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서울역사박물관, [여]: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고문서연구, [이]:이재난고(황윤석), [조]:조선전기고문서집성(정구복 외), [지]:지수재집(유철기), [직]:직암집(신경), [집]:고문서집성, [평]:평창이씨사직공원통과족보.
- 5) 남권희,『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499쪽. 이은(李殷)은 영천(영양)이씨 감사공파의 파조이며, 『永陽李氏監司公派譜』(1972년 간행)에 이은이 받은 4점의 왕지가 등서되어 있다. 이 가운데 1점은 남권희의 조사에 의해 실물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은 “王旨 李殷爲嘉善大夫公州牧使兼勸農兵馬團練使者 永樂二年七月廿六日”로서 왕지 형식에 부합하고, 내용의 사실성도 실록 등의 문헌자료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平昌李氏司直公元通派族譜』(1967년 간행)에 수록된 내용은 “王旨 李雅爲宣節將軍平壤道右翼江西管軍千戶者 永樂十二年十二月十三日”로서 왕지 형식에 부합하고, 문서의 내용 또한 당시 제도에 부합한다. 다만 아직까지 조선초기 ‘관군천호’에게 발급된 고신이 발견된 적이 없고 관련 연구도 미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1600년 (선조 33) 경주최씨 최진립을 ‘水軍萬戶’로 삼은 고신(교지)이 1점 전하고 있다.
- 7) 『直菴集』, “孟思誠爲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集賢殿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兼判兵曹事者 宣德年月日 朝鮮國王之印 [...]” (원문 출처: 한국고전종합DB)

1427년에 발급된 왕지일 것으로 판단된다.⁸⁾ ‘김길통 왕지’도 유척기(1691-1767)가 1746년에 지은 「金文平公吉通紅牌跋」에 당시 청풍김씨 집안에 전하고 있던 원본 문서를 직접 본 그대로 수록해놓은 경우이다.⁹⁾

A유형의 경우는 전재할 당시 해당 인물의 후손이나 당대 문필로 이름난 인물에 의해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자가 써어진 위치와 인문(印文)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등 원본을 직접 보고 기록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광정(1674-1756)이 1305년에 작성된 ‘장계(張桂) 흥쾌’를 보고 적은 「張氏家藏大德紅牌識」, 황윤석(1729-1791)이 김자송(金子松)의 후손 김우생(金佑生)의 행장을 지을 때 상산김씨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려시대 문서를 직접 보고 필사해 둔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¹⁰⁾

B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金海金氏世譜』에 수록되어 있는 1339년(충숙왕복위 8) ‘김천부(金天富) 왕지’, 『慶州金氏樹隱公派世譜』에 수록되어 있는 ‘김충한(金沖漢) 왕지’, 『忠州石氏派譜』에 수록되어 있는 1416년(태종 16) ‘석여명(石汝明) 왕지’가 있다. 이 문서들은 기재된 내용과 문서의 양식이 당시 제도에 맞지 않아 후대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원본 및 사본

현재 원본 또는 사본 형태의 고문서로 전하고 있는 왕지는 아래의

-
- 8) 『世宗實錄』 9년(1427) 1월 25일, “以李稷爲星山府院君, 黃喜左議政, 孟思誠右議政, 崔閏德判左軍府事, 曹備衡參贊議政府事, 成達生工曹判書, 成抑右軍都摠制, 李歲工曹判, 趙賛同知摠制, 洪煥右軍同知摠制, 尹夏中軍摠制.” (원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이하 실록 동일)
- 9) 『知守齋集』, “[…] 今公後孫判校聖壇持示公登科時所受紅牌 第一行 書王旨二字 第二行 書成均生員金吉通乙科第一人及第出身者 第三行 書宣德七年四月十八日 年月上安朝鮮國王之印六字 [...].” (원문 출처: 한국고전종합DB)
- 10) 황윤석이 저술한 『이재난고』에 전재된 문서는 카와니시 유야(川西裕也)에 의해 학제에 소개되었다(『이재난고』 신축일력 소재 여말선초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2010). 그 가운데 문서의 기두(起頭)에 ‘國王鈞旨’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고려시대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서 양식상 조선시대 고신(告身)과 공통점이 있어 조선초기 관교(官敎) 양식의 모태가 되는 문서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頤齋亂藁』 “○國王鈞旨 金子松爲檢校神虎衛保勝中郎將者 泰定二年四月口日[國寶而文不類古篆 疑元時因蒙古字爲文如篆 ○忠肅王十二年 在元燕京 五月東還]” (원문 출처: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51점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해당 고문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유리필름이나 사진자료로만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¹¹⁾ 원본 왕지의 대부분은 해당 인물의 종가, 후손가, 국·공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표2·원본·사본 목록

연번	연도(서력, 왕력)	월	문서명	크기(cm)	인문	도판	비고
1	1344	충혜왕5	4	申 祐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2	1393	태조2	10	都 膚 왕지(告身)	36×26,5	조선왕보	[국] 보물724-1
3	1393	태조2	10	朴剛生 왕지(告身)	미상	조선왕보	[국편] 국편(유리건판)
4	1394	태조3	3	陳忠貴 왕지(告身)	68×43	조선왕보	[국] 보물1161, 국립중앙
5	1394	태조3	9	徐 愈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6	1394	태조3	9	都 膚 왕지(告身)	37,5×26,5	조선왕보	[국] 보물724-2
7	1395	태조4	2	都 膚 왕지(告身)	36,3×25,2	조선왕보	[국] 보물724-3
8	1395	태조4	2	金懷鍊 왕지(告身)	69,5×70	조선왕보	[국] 보물438
9	1395	태조4	12	康舜龍 왕지(告身)	70×51,5	조선왕보	[국] 규장각
10	1396	태조5	3	趙 崇 왕지(告身)	68×76,2	조선왕보	[국] 보물953
11	1397	태조6	1	金懷鍊 왕지(告身)	72×74	조선왕보	[국] 보물438
12	1397	태조6	12	都 膚 왕지(告身)	34,5×25,4	조선왕보	[국] 보물724-4
13	1398	태조7	9	李全生 왕지(告身)	78×53	조선왕보	[국] 보물1001-1
14	1399	정종1	1	李從周 왕지(告身)	73,4×67	조선왕보	[국] 보물1006
15	1399	정종1	1	沈之伯 왕지(告身)	36,5×69,5	미상	[국편] 국편(유리건판)
16	1399	정종1	1	沈之伯 왕지(告身)	37,5×63,5	미상	[국편] 국편(유리건판)
17	1399	정종1	2	趙 溫 왕지(賜牌)	82,4×80,7	조선왕보	[국] 보물1135
18	1401	태종1	1	徐 愈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19	1401	태종1	3	曹 怡 왕지(賜牌)	미상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899
20	1401	태종1	4	盧 革 왕지(紅牌)	76,5×60,5	조선왕보	[공]
21	1402	태종2	4	尹 臨 왕지(告身)	33,1×44,2	(조선국왕지인)	[국] 서울유형107
22	1402	태종2	11	成石璘 왕지(告身)	32×61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746
23	1402	태종2	12	鄭 有 왕지(告身)	40×70	미상	[연]26
24	1404	태종4	7	李 殷 왕지(告身)	미상	미상	[고]
25	1406	태종6	윤7	曹 怡 왕지(告身)	40×73	조선국왕지인	[국] 보1226

11) 유리필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1393년 박강생 왕지(1점), 1399년 심지백 왕지(2점), 1410년 김지 왕지(2점), 1429년 마천목 왕지(1점)의 경우이다.

표2-계속

26	미상	태종	12	鄭 懈 王지(告身)	44×77	미상	[역]	경남유형320
27	1409	태종9	2	尹 臨 王지(告身)	33.1×44.2	조선국왕지인	[국]	서울유형107
28	1409	태종9	8	曹 怡 王지(告身)	미상	조선국왕지인	[국]	보898
29	1409	태종9	9	鄭 懈 王지(告身)	38×65.1	조선국왕지인	[역]	경남유형320
30	미상	태종		鄭 懈 王지(告身)	43×78	미상	[역]	경남유형320
31	1410	태종10	4	金 摯 王지(告身)	42.3×34	조선국왕지인	[국편]	
32	1410	태종10	9	金 摯 王지(告身)	41.8×61.8	조선국왕지인	[국편]	
33	1414	태종14	4	安 省 王지(告身)	31.9×21	조선국왕지인	[국]	전북유형143
34	1415	태종15	9	南 在 王지(告身)	24×85.7	(조선국왕지인)	[조]	보물1173
35	1416	태종16	6	李之帶 王지(告身)	38×65.2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1474-2
36	1416	태종16	8	李澄石 王지(告身)	45.6×63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1001-1
37	1416	태종16	12	田 興 王지(告身)	36.2×31.2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727-1
38	1417	태종17	1	朴 昭 王지(告身)	36×58	미상	[집]	
39	1417	태종17	10	田 興 王지(告身)	30×28	조선국왕지인	[국]	보물727-2
40	1420	세종2	3	李補丁 王지(紅牌)	85.7×79.8	미상	[국]	보물651-1
41	1420	세종2	3	南 鮑 王지(紅牌)	미상	미상	[종]	
42	1425	세종7	6	曹 怡 王지(告身)	43×77	조선국왕지인	[국]	보897
43	1428	세종10	5	裴 澤 王지(告身)	44.7×78.6	조선국왕지인	[서]	
44	1429	세종11	2	馬天牧 王지(告身)	43×65	조선국왕지인	[국편]	국편(유리건판)
45	1433	세종15	3	李澄石 王지(告身)	45.6×63	국왕행보	[국]	보물1001-1
46	1434	세종16	2	李澄石 王지(告身)	44.6×82.5	국왕행보	[국]	보물1001-1
47	1434	세종16	4	李 穎 王지(告身)	49×71	국왕행보	[역]	
48	1434	세종16	9	田 興 王지(告身)	39.2×48	국왕행보	[국]	보물727-3
49	1435	세종17	4	李 臨 王지(紅牌)	73.4×67	국왕신보	[국]	보물1006
50	1435	세종17	4	趙瑞卿 王지(紅牌)	76.6×70	국왕신보	[국]	보물954-1
51	1435	세종17	6	鄭自新 王지(告身)	66×42	미상	[연]26	

III. 왕지의 진위 판단 기준

한국 학계에서 고문서 진위 감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은미(金恩美)가 조선시대 문서위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선 시대 문헌자료에 수록된 각종 문서위조 범죄의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판결, 실제 문서위조의 유형과 방법 등을 소개한 것이다.¹²⁾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 고문서 전반에 대한 진위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다.

12) 김은미, 「조선후기 교지위조의 일연구」, 『고문서연구』 30(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은미, 「조선시대 문서위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8).

여기서는 조선초기 왕지의 진위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고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왕지, 선행연구 성과, 실록 등에 기재된 당시 제도 등을 근거로 왕지의 진위 판단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첫째, 문서 형식과 내용을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왕명문서에 부합하는 보인(寶印)의 정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당시 공문서에 사용된 서체(書體)의 특징을 검토 하여야 한다. 넷째, 고문서의 서사 재료인 문서지(文書紙), 먹(墨), 인주(印朱) 등에 대한 채질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¹³⁾

1. 문서 형식 및 내용

문서는 문서 작성 시점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문서 작성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글자가 쓰인 위치 및 배열, 문서에 사용된 용어, 문서에 날인된 인장의 위치 등의 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왕지도 이러한 형식 요소를 꼼꼼히 검증해보아야 한다.

年	○	○	○	王
號	○	○	○	旨
寶	○	·	·	
印	○	·	·	
年	·	·	·	
○	○	○	○	
月	○	○	○	
○	○	○	○	
日	○	○	○	

우선 글자가 쓰인 위치와 문자의 배열은 좌측의 도식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서의 첫 행에 ‘王旨’ 두 글자가 단독으로 위치하고, 이어서 행을 바꾸어 문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입된다. 그 첫 글자는 ‘王’자와 ‘旨’자의 가운데 지점 또는 ‘旨’자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한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 발급 연월일을 적는데, 발급 당시의 중국 연호를 본문의 첫째 글자의 높이와 나란한 위치에 적는다.¹⁴⁾ 보인(寶印)은 대체로 발급연도가 적힌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年’자보다 조금 더 내려 찍는 경우도 보인다.

문서의 본문에 기재된 내용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13) 김은미의 경우 앞의 학위논문에서 위조 고문서 감정 기준으로 문서의 내용, 문서식(文書式), 서체(書體), 인적(印跡)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김은미(2008), 앞의 논문, 135-181쪽.

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2007), 113쪽. 유지영의 연구에 의하면 융경 1년(세종 22) 이후부터 고신(교지)의 첫 행에 적힌 '教旨'라는 글자의 위치와 발급 연호의 첫 글자의 위치가 나란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서는 앞서 소개한 전재본 왕지로서 문서의 내용이 문서 발급 당시의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 ① 王旨 金天富爲嘉善大夫工曹典書者 至元五年正月 日
- ② 金沖漢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前朝禮儀判書者 建文三年八月
- ③ 王旨 石汝明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者 永樂十四年六月二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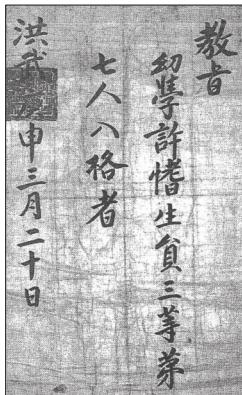
①은 『김해김씨세보』에 수록되어 있는 ‘김천부 왕지’이다. 지원 5년은 1339년(충숙왕복위 8)으로 당시 고려의 관제에는 ‘가선대부’와 ‘공조전서’가 존재하지 않았다.¹⁵⁾ ②는 『경주김씨수은공파세보』에 수록되어 있는 ‘김충한 왕지’로 1401년(태종 1)에 발급된 증직(贈職)문서이다. 그러나 문서에 기재된 ‘오위도총부’는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비로소 등장하였으므로 1401년(태종 1)에 ‘오위도총부 도총관’직을 증직 하였다는 것은 내용상 문제가 있다. ③은 『충주석씨파보』에 수록된 ‘석여명 왕지’로 문서 작성 형식이 여타 고신과 차이가 있다. 조선초기 왕지 형식으로 작성된 고신은 한결같이 ‘某爲某階某職’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 문서만 ‘爲’ 대신 ‘除’가 사용되었다. 이 문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일자의 실록 기사에 구체적으로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동일한 문구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는 문헌자료를 근거로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추가적으로 ‘왕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고려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허기(許愬) 교지의 경우가 그 예이다.¹⁷⁾ 이 문서는 문서에 기재된 발급 연도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고문서 중 발급 시점이 가장 오래된 백패(白牌)이다. 그러나 문서의 발급 연도인 1380년(우왕 6)에는 생원을 선발하여 ‘교지’ 형식의 백패를 발급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교지’ 형식의

15) 이에 대해서는 이미 남권희, 박준호 등이 지적한 바 있다.

16) 『太宗實錄』 16년(1416) 6월 2일, “除拜檢校官。旱甚，上憂之，問六曹曰：‘欲除拜無祿檢校，可使人人喜悅乎？’僉曰：‘必喜之矣。’乃傳旨六曹·臺諫·承政院及二品以上，各舉年六十歲已上，可爲檢校漢城尹者，乃除檢校漢城尹一百三十四·工曹參議四十七·判司宰監事十八·監正六·副正二十·漢城少尹十三·漢城判官十·司宰注簿七十九。以各司箇月已滿吏典，授檢校注簿者四十。又以李慄爲豐海道兵馬都節制使兼判海州牧使。”

17) 허기 교지는 이종일(199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남권희(2002)가 재차 이 문서를 소개하였다. 이 문서는 용어와 형식 요소를 근거로 이미 비판된 바 있다.



도1-1380년 허기 백패

문서는 조선 세종 연간에야 등장한다.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는 방식도 연호와 간지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教旨’라는 글자와 ‘洪武’라는 글자 또한 동일한 높이에 쓰여 있다는 점 등 제반 요소를 살펴볼 때 고려시대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조선시대 백패 양식, 그것도 조선 중후기 양식을 모방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2. 보인

고문서에 남아 있는 인문(印文)은 고문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인 단서가 된다. 왕지는 왕언(王言)을 문서화한 것이므로 보인(寶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보인의 인문을 판독할 수 있다면 해당 문서의 발급시점에 사용된 보인이 맞는지의 여부까지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초기에는 동일한 형식의 왕지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사용된 보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놓은 조선초기 보인의 사용 변화에 관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면 표3, 표4와 같다.¹⁸⁾

표3-조선초기에 사용된 보인

사용 시기	인문	비고
1392년(태조1) 7월부터	高麗國王之印	1370년(공민왕19) 5월 명 태조 하사
1393년(태조2) 4월부터	(國王信寶), 朝鮮王寶	
1401년(태종1) 6월부터	朝鮮國王之印	명 혜제 하사
1403년(태종3) 4월부터	朝鮮國王之印	명 성조 하사
1433년(세종15) 3월부터	國王行寶, 國王信寶	
1443년(세종25) 10월부터	施命之寶, 昭信之寶	

18)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教文書様式の變遷」, 『朝鮮學報』 第205輯(2007), 103-124쪽.
성인근, 「조선시대 인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8), 83-97쪽.

표4-조선초기 보인의 인문

인문	고려국왕지인	조선왕보	조선국왕지인	국왕행보	국왕신보
출처	1392년 이제 개국공신교서	1398년 이전생 왕지	1409년 정전 왕지	1434년 이정 왕지	1435년 조서경 왕지

『태조실록』에 배극렴을 위시한 신료들이 고려의 국세(國璽)를 태조 이성계에게 올린 기사가 보이고¹⁹⁾, 『승정원일기』 영조대 기사에 홍무년 간의 이지란(李之蘭) 왕지에 ‘고려국왕지인’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²⁰⁾ 현재 1392년 10월 이제(李濟)에게 발급된 개국공신교서에 ‘고려국왕지인’이 찍힌 사례가 남아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이후 1401년(태종 1) 6월 명(明)으로부터 ‘조선국왕지인’이 사여되기 전까지 사용된 보인으로는 ‘조선왕보’가 있다. 이 보인은 ‘고려국왕지인’을 명으로 돌려보낸 이후 ‘조선국왕지인’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으로서 고문서에 사용된 실례로는 1393년 10월 도옹(都應) 왕지로부터 1401년 3월 노혁(盧革) 왕지에까지 보인다.

1401년 6월 이후부터는 ‘조선국왕지인’이 왕명문서에 사용되다가 조정에서 대보(大寶) 사용에 관한 논의가 거듭된 뒤 1433년 3월부터 ‘조선국왕지인’은 사대(事大)문서에만 사용하고, ‘국왕신보’와 ‘국왕행보’를 새로 만들어 그 용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였다. 즉 ‘국왕신보’는 사신(事神)·교

19) 『太祖實錄』 1년(1392) 7월 17일, “丙申/十七日丙申, 太祖卽位于壽昌宮. [...] 百官奉傳國璽, 置于王大妃殿, 廙務就稟裁決. 壬辰, 大妃宣敎, 以太祖監錄國事. 乙未, 裴克廉·趙浚與鄭道傳·金士衡·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南閭·張思吉·鄭摶·金仁贊·趙仁沃·南在·趙璞·吳蒙乙·鄭擢·尹虎·李敏道·趙狷·朴苞·趙英珪·趙眘·趙溫·趙琦·洪吉旼·劉敬·鄭龍壽·張湛·安景恭·金稠·柳爰廷·李稷·李懃·吳思忠·李舒·趙英茂·李伯由·李敷·金輅·孫興宗·沈孝生·高呂·張至和·咸傅霖·韓尚敬·黃居正·任彥忠·張思靖·閔汝翼等大小臣僚及閑良耆老等奉國寶詣太祖邸, 填咽閭巷.”

20) 『承政院日記』 영조 50년(1774) 4월 13일, “[...] 海州李敬範曰, 臣請納太祖大王·太宗大王御筆. 上命入之, 一則草書, 而永樂年間, 李和癸爲通政王旨, 一則小楷, 而洪武年間, 以李之蘭爲輔祚功臣青海君王旨也. 仁孫曰, 李和癸王旨印文, 卽朝鮮國王之印也. 宗鉉曰, 青海伯王旨印文, 卽高麗國王之印也. 仁孫曰, 李之蘭討倭屢有功, 或高麗時已封青海伯也. 上曰, 其時則之蘭修姓也. 上曰, 教旨草書頗異, 受入. [...]” (원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21)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문서사적 의의 검토」, 『전북사학』 36(2010), 80쪽.

유(敎宥) · 공거(貢舉) 등에 쓰고, ‘국왕행보’는 책명(冊命) · 제수(除授) 등에 쓰게 하였다.²²⁾

이외에도 보인을 검토할 때에는 후대에 정교하게 모각(模刻)하여 문서에 찍어놓았을 가능성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진본에 찍혀 있는 인문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의 크기²³⁾, 전자(篆字)의 정확성, 획의 두께, 획 사이의 간격 등의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고문서에 찍혀 있는 보인 가운데는 전자(篆字)의 모양이 잘못되거나 획의 새김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3. 서체

현재까지 왕지의 서체(書體)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으나, 조선시대 초서체 고신에 대해서는 심영환의 선행연구가 있어 조선초기 왕지 형식으로 작성된 초서체 고신의 특징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다. 심영환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초기에는 고신을 작성할 때 주로 초서체로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세종대 이후 몇 번의 논의를 거쳐 차츰 해서체로 바뀌어갔지만, 17세기 초반까지도 꾸준히 초서체 고신이 작성되었다. 초서체의 경우에도 14세기에는 주로 연면체(連綿體)의 특징을 보이지만, 15세기 이후부터는 독초(獨草)의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1405년(태종 5) 실록 기사를 근거로 조선초기 문관(文官)에게 발급한 고신의 작성자는 이조(吏曹)의 문선사(文選司) 서리(書吏)임을 적시하였다.²⁴⁾

현전하는 조선초기 왕지는 대부분 초서체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22) 『世宗實錄』 14년(1432) 10월 12일, “禮曹啓: ‘歷代帝王璽寶之制, 漢六璽·唐八璽·宋八璽, 隨事施用。若唐之神璽·宋之鎮國神寶, 以鎮中國, 藏而不用, 其信璽信寶, 用之於事神發兵等事; 行璽行寶, 用之於封國冊封等事; 其他璽寶之文與用之之事, 代各不同。我朝帝賜大寶之文, 稱朝鮮國王, 不宜用於境內常事。乞依古制鑄成國王信寶, 用之於事神教育有貢舉等事; 國王行寶, 用之於冊封除授等事; 其帝賜大寶, 除事大文書外, 勿用。’從之。” 『世宗實錄』 15년(1433) 3월 2일, “行寶信寶成。舊有傳國寶, 文曰國王信寶。上命集賢殿, 稽古制改鑄此兩寶, 其制一依欽賜大寶, 皆用金, 信寶重一百六十四兩, 行寶重一百七十六兩。信寶文曰國王信寶, 行寶文曰國王行寶。信寶用之於事神教育等事, 行寶用之於冊封除授等事, 欽賜大寶, 則只用於事大文書。”

23) 기존에 조사된 바로는 ‘조선왕보’는 가로·세로 약 11.5cm, ‘조선국왕지인’은 약 10cm 정방형이다. 필자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국왕행보’의 경우도 약 10cm 정방형이다.

24)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소와당, 2008), 119-134쪽.

왕지 가운데 사패의 경우는 모두 해서체로 작성되어 있고, 고신 가운데 일부도 해서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패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문서끼리 서체와 형식의 통일성을 띠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고신의 경우 다수의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해서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서가 어떤 서체로 작성되었느냐가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공문서의 경우는 문서 작성 당시의 관행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과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문서의 실질적인 작성자인 영사(令史) · 녹사(錄事) · 서리(書吏)들의 문서 서사 관행 또는 그들이 구사한 서풍(書風)과 관계된다.

조선초기 고신 왕지 가운데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해서체로 작성된 문서로는 1394년 진충귀 왕지, 1394년 서유 왕지, 1395년 김희련 왕지, 1417년 박소 왕지[교지], 1433년 이정석 왕지가 있다. 이들 문서는 다음 장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 재질

이상에서 제시한 진위 판단 기준들은 문서의 형식적 요소를 근거로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1차적인 검증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서의 형식, 내용, 보인, 서체 등의 검증 요소만으로는 엄밀히 말해 진위 판단의 객관성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고문서의 내용과 형식 요소가 당시의 제도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문서의 외형을 이루게 한 각종 서사재료(書寫材料)는 당시의 물질 요소를 반영한다.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문서지(文書紙), 먹(墨), 인주(印朱)는 당시에 생산된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물질의 특성상 전래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최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개별 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집적한다면 시기에 따른 특성이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 고문서의 재질 분석을 통한 진위 감정은 시도된 적이 없고, 필자 또한 이 방법을 연구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영역은 현재 문화재보존과학 등의 학문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고문서의 형태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제반 서사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고문서 진위 감정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진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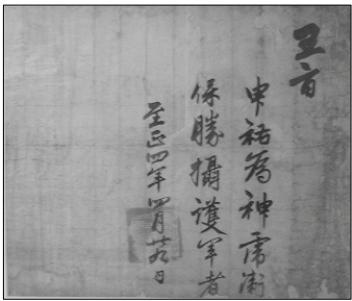
앞서 제시한 진위 판단 기준을 토대로 현전하는 왕지의 진위를 실례를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표2에서 열거한 왕지 가운데 다수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 진위와 가치가 이미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기준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경우, 진위 판단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문서사(文書史)적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1344년 신우 왕지 | ⑨ 1407년 고봉례 선지 |
| ② 1393년 박강생 왕지 | ⑩ 1415년 남재 왕지 |
| ③ 1394년 진충귀 왕지 | ⑪ 1417년 박소 교지 |
| ④ 1394년/1401년 서유 왕지 | ⑫ 1420년 남희 왕지 |
| ⑤ 1395년 김회련 왕지 | ⑬ 1433년 이징석 왕지 |
| ⑥ 1395년 강순룡 왕지 | ⑭ 1434년 이정 왕지 |
| ⑦ 1401년 노혁 왕지 | ⑮ 1435년 이임 왕지 및 조서경 왕지 |
| ⑧ 1402년 정유 왕지 및 1435년
정자신 왕지 | |

1) 1344년 신우 왕지

이 문서는 1344년(충목왕원) 4월 29일에 신우를 ‘神虎衛保勝攝護軍’으로 삼으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발급일자를 근거로 하면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로는 유일하게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이지만²⁵⁾, 고려시대에 작성된 동일한 유형의 고문서가 알려져 있지 않아 진본 여부를 검증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 왕지와 비교해볼 때 형태적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至正)’ 연호가 쓰인 위치가 다른 글자의 시작 높이보다 아래에 있고, 인문 또한 발급월일

25) 고려시대에 신우 왕지와 같은 형식의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가 대비된다. 박준호는 신우 왕지의 진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박재우(2005)와 川西裕也是 신우 왕지의 진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런 형식의 문서가 고려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다.



도2-1344년 신우 왕지

保勝攝護軍'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왕지에 적힌 내용과 발급 연도에 차이가 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이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증할 만한 확정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원문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인문²⁶⁾과 지질(紙質)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히 이 문서의 진위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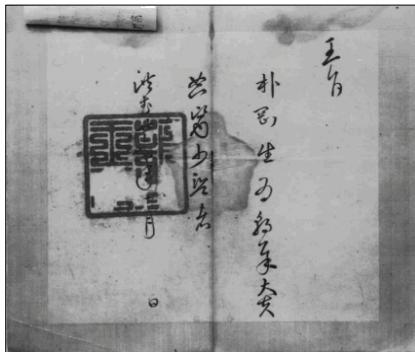
2) 1393년 박강생 왕지

이 문서는 1393년(태조 2) 10월에 박강생(朴剛生)을 '朝奉大夫典醫少監'으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이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유리필름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인문이 일부 훼손되었지만 '조선왕보'로 판독된다. 현재 같은 일자에 발급된 도옹(都膺) 왕지가 있어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이 두 문서는 같은 일자에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도 '…爲朝奉大夫典醫少監'으로 동일하다. 서체는 모두 초서체로 작성되었으나 필획의 구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보인은 모두 '조선왕보'가 찍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王'자의 좌우 획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문서 중 하나는 진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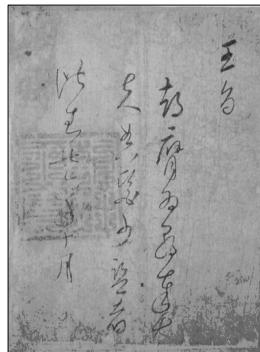
26) 『高麗史』志(26) 輿服一 印章 王印章, 『고려사』에 의하면 1281년(충렬왕 7)에 元으로부터 '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印'을 사여 받았고, 1282년(충렬왕 8)에 元으로부터 '駙馬國王印'을 사여 받았으며, 1370년(공민왕 19) 明으로부터 '高麗國王之印'을 사여 받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신우 왕지에는 '부마국왕인'이 찍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 가운데에 찍혀 있다. 조선초기 고신의 경우 연호와 본문의 글자 높이가 서로 같고, 인문이 발급 연도를 중심으로 찍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退齋先生實記』에 수록되어 있는 신우의 15세손 신체인(申體仁)이 1765년에 지은 신우의 사적(事蹟)에 '忠惠王二年辛巳 拜神虎衛



도3-1393년 박강생 왕지



도4-1393년 도옹 왕지

현재 확인되는 ‘조선왕보’의 인문을 몇 건 살펴보자. 표5를 보면 박강생 왕지에 찍힌 ‘王’자의 좌우로 구부러진 획의 방향이 다른 문서에 찍힌 ‘王’자의 그것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의 획도 상대적으로 굵은 편이다. 박강생의 관력 가운데 전의소감을 지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보인의 인문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박강생 왕지는 진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만 후대에 와서 흐릿해진 인문에 가필(加筆)을 하면서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5- ‘조선왕보’ 인문 비교

1393년 박강생	1396년 조종	1397년 김회련	1399년 조온	1401년 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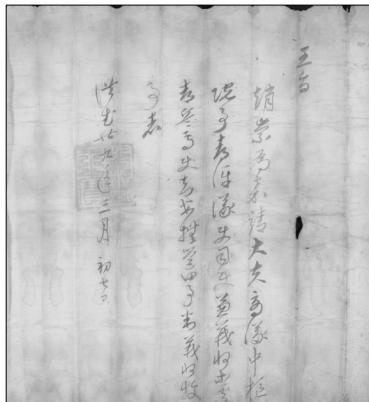
3) 1394년 진충귀 왕지

이 문서는 1394년(태조 3) 3월 27일에 진충귀(陳忠貴)를 ‘가정대부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겸의주등처도병마사 의주목사’로 삼으면서 빨급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조선왕보’가 찍혀 있다. 『태조실록』의 동일 일자에 이 문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고²⁷⁾, 관련 유물로 1395년(태조 4)에

27) 『太祖實錄』 3년(1394) 3월 27일, “以南閭爲三司右僕射, 南在參贊門下府事, 趙琳知門下府事, 鄭摠政堂文學, 河峴簽書中樞院事, 陳忠貴商議中樞院事兼義州等處都兵馬使 [...].”



도5-1394년 진충귀 왕지



도6-1396년 조승 왕지

진충귀에게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²⁸⁾

진충귀 왕지에 기재된 내용은 실록에 수록된 기사와 녹권에 기재된 관직명을 볼 때 그 기재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진충귀 왕지에 기재된 관직명의 표기 방식이 조선초기 관직명 기재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고신 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직명의 기재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1396년(태조 5) 조승 왕지의 기재 내용²⁹⁾과 거의 동일하여 진충귀 왕지만의 독특한 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서체적 특징은 조선초기에 작성된 진본 왕지로 확증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서체와 더불어 보인과 지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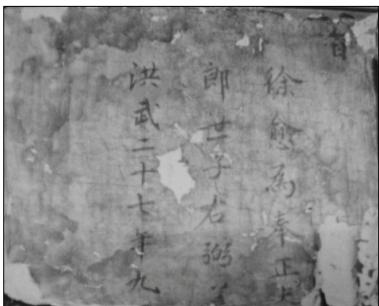
4) 1394년 및 1401년 서유 왕지

이 문서는 이천서씨(利川徐氏) 문중에 전래되고 있고, 『이천서씨족보』에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1394년(태조 3)에 발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01년(태종 1)에 발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래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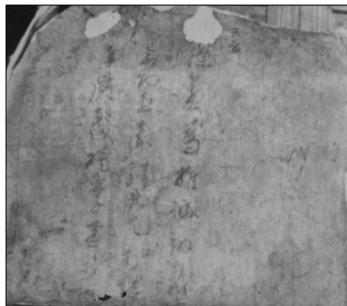
28)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녹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다. 보물 11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395년 윤9월에 발급된 것이다. 문서의 기두(起頭)에 “功臣 嘉靖大夫 義州等處都兵馬 兼義州牧使 同中樞院事 陳忠貴”라고 기재되어 있다.

29) 조승 왕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旨 趙崇為嘉靖大夫 商議中樞院事 都評議使司使 兼義州等處 都兵馬使 知安撫營田事 判義州牧使者 洪武廿九年 三月 初七日”[朝鮮王寶].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었고, 도판에는 붉은색 인문의 흔적이 보이지만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1394년 왕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상·하단이 결락된 상태이고, 서체는 해서체로 작성되었으며 필획의 구사가 진충귀 왕지와 매우 유사하다. 1401년 왕지는 도판으로 볼 때 초서체로 작성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작성된 내용을 정확히 판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도7-1394년 서유 왕지



도8-1401년 서유 왕지

1394년 왕지는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서유(徐愈)를 ‘奉正大夫 ■…■郎 世子右弼善 …’으로 삼는 내용이다. 조선초기 관제에 의하면 세자관속(世子官屬)으로 좌우필선 각 1명을 두었고, 그 품계는 정4품에 해당하였다.³⁰⁾ 따라서 내용상 조선초기 제도에 부합한다. 1401년 왕지는 서유를 ‘推誠翊戴佐命功臣 嘉靖大夫 ■…■’로 삼는 내용으로 추정되나 전문을 정확히 판독할 수 없다. 이는 세종실록의 기사에 비추어볼 때 1401년 1월에 우부승지 서유에게 좌명공신의 훈호를 내리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러나 조선초기 좌명공신의 훈호에 ‘推誠翊戴’를 부가한 용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원문서에 대한

30) 『太祖實錄』1년(1392) 7월 28일, “[…] 世子官屬：皆兼，掌講學侍衛等事。左右師各一，正二品；左右賓客各一，從二品；左右輔德各一，從三品；左右弼善各一，正四品；左右文學各一，正五品；左右司經各一，正六品；左右正字各一，正七品；左右侍直各一，正八品；書吏四，八品去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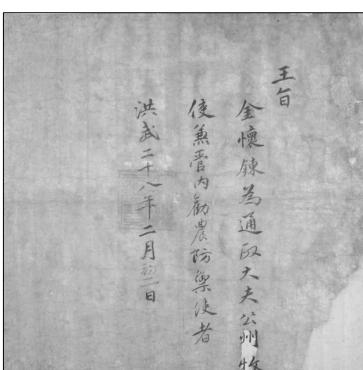
31) 『太宗實錄』1년(1401) 1월 15일, “[…] 參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霍·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左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珪·金宇·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命，軍資少監宋居信，當危救患。翊戴佐命四等稱下，父母妻封贈，直子蔭職，田六十結，奴婢六名。[…]”

정확한 판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두 문서의 경우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내용과 문서의 형태적인 특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어야만 진위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5) 1395년 김회련 왕지

이 문서는 1395년(태조 4) 2월 초2일에 김회련(金懷鍊)을 ‘통정대부 공주목사 겸관내권농방어사’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으로서 현재 도강김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다. 해서체로 작성되었고, ‘조선왕보’가 찍혀 있다. 문서의 일부가 훼손되어 후대에 배접을 한 흔적이 보이고, ‘州牧’이라는 두 글자는 배접을 하면서 후대에 채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회련 왕지는 문서 내용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 ‘겸관내권농방어사’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1395년 윤9월에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이 남아 있는데, 녹권에는 ‘功臣 前通政大夫 公州牧使 兼管內勸農兵馬使 金懷鍊’으로 적혀 있어 왕지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다. 실록 자료의 조선초기 기사에도 ‘방어사(防禦使)’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또 『頤齋遺藁』에 수록되어 있는 ‘啓功郎軍資監直長 贈通訓大夫軍器寺正 遠慕堂 金公行狀’에 기록된 김회련 관련 내용에도 태조원년에 ‘공주목사 겸관내권농병마사’에 제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³²⁾



도9-1395년 김회련 왕지

이 부분은 조선초기 지방관에게 ‘권농방어사’라는 직이 겸직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고려사』 기사 중 공양왕 3년에 무안군과 함평현에 권농방어사를 겸하게 한 기록이 보일 뿐³³⁾, 조선초기 관제에 ‘겸권농방어사’의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1395년 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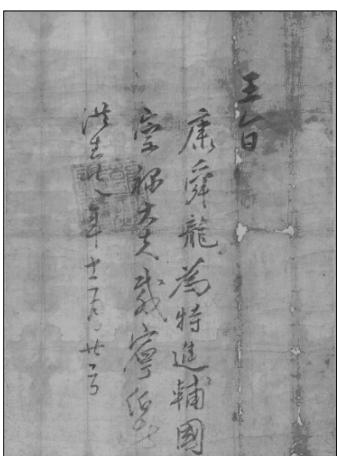
32) 『頤齋遺藁』 卷之十九, 啓功郎軍資監直長, 贈通訓大夫軍器寺正遠慕堂金公行狀, “[…] 諱懷鍊入本朝檢校漢城府尹兼判書雲觀事。太祖元年壬申, 以公州牧使兼管內勸農兵馬使。錄開國從勳。戊寅判海州牧使。創客館東軒。事載輿地勝覽。[…]” (원문 출처: 한국고전종합 DB).

33) 『高麗史』 志(11) 地理 二 全羅道 羅州牧 務安郡; 『高麗史』 志(11) 地理 二 全羅道 靈光郡 咸豐縣(원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련 왕지의 기재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6) 1395년 강순룡 왕지

이 문서는 1395년(태조 4) 강순룡(康舜龍)을 ‘특진보국승록대부 함녕백’으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으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특진보국승록대부’는 조선 개국초 관제에 의하면 동반 정1품에 해당하는 관계(官階)이고, ‘함녕백’은 관직이 아니라 작(爵)을 부여한 것이다.³⁴⁾ 조선 개국과 더불어 작(爵)을 부여한 경우는 배극렴을 성산백으로, 조준을 평양백으로, 이화를 의안백으로 한 예가 있긴 하지만³⁵⁾, 문서가 전하는 경우는 강순룡 왕지의 사례가 유일하다. 강순룡에게 함녕백이라는 작을 부여한 공식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성계의 처남으로 개국과정에 힘을 보탠 정황을 근거로 볼 때 사실일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도10-1395년 강순룡 왕지

문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조선왕보’라고 새겨진 보인이 여타 왕지의 경우와 달리 좌우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치 또한 발급연월일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왕명문서에 찍는 보인은 그 위치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문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하나 더 검토할 사항으로는 조선 영조조 실록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1744년(영조 20) 12월 24일에 강순룡의 후손 강치경이 ‘태조어필 교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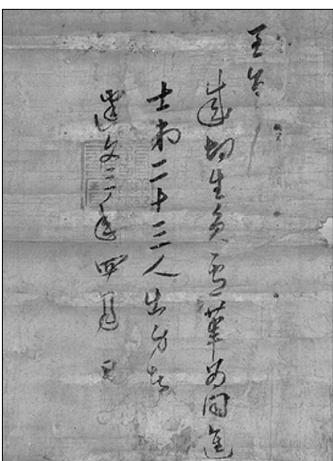
영조에게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서를 본 영조는 ‘조선왕보’라고 새겨진 인문을 보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고³⁶⁾, 친히 발문(跋文)을 작성해주

34) 현재 이 문서에 대한 해제와 강순룡에 관한 인물 설명에는 ‘재령백’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초서로 쓰여진 글자도 ‘咸’자보다는 ‘載’자에 가깝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기사와 송환기의 문집 『性潭先生集』에 수록된 「太祖英宗二聖筆蹟跋」에는 모두 ‘함녕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함녕백’을 따른다.

35)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 “下教門下府: 以洪永通判門下府事, 安宗源領三司事, 裴克廉翊戴補祿功臣·門下左侍中·星山伯, 趙浚佐命開國功臣·門下右侍中·平壤伯, 庶弟和佐命開國功臣·商議門下府事·義興親軍衛都節制使·義安伯 [...]”

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중인 강순룡 왕지는 조선 영조조 실록 기사에 나타난 문서일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으나 이 문서는 조선조 이래 태조 어필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앞서 왕지의 서체를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고신의 작성자는 고신 작성 담당 기관의 서리(書吏)라는 선형연구를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국가제도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왕이 고신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제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어필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1401년 노혁 왕지



도11-1401년 노혁 왕지 - 홍패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이 문서에 찍힌 ‘조선왕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 문서는 1401년(태종 1) 성균생원 노혁(盧革)이 ‘동진사(同進士) 제23인’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이다.³⁷⁾ 초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조선왕보’가 찍혀 있다. 이 당시는 여전히 고려시대 과거(科舉)의 유제(遺制)가 남아 있던 시기였으므로 후대와는 달리 을과(乙科), 병과(丙科), 동진사(同進士)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³⁸⁾ 따라서 이 문서에 기재된 ‘동진사’는 조선시대 생원·진사 제도와는 무관하며, 조선초기에 실재했던 제도로서 문서의 신빙성에

36) 『英祖實錄』 20년(1744) 12월 24일, “商山府院君康舜龍後孫康致卿, 以太祖御筆教旨上之, 上曰: ‘覽此教旨中印篆, 考其年月, 卽聖朝創業初年也。丙子後, 用清國寶, 噎因相臣李頤命所達, 始知槐院有海昌尉摸鑄皇朝印矣。今覽朝鮮王寶篆, 又奇矣。今則朝臣教旨, 皆用施命之寶, 其來已久。此則雖不可改, 然旣覽寶篆, 尤豈泯焉? 國家教命及王后·世子冊禮時, 當以此用之。’仍命尙方, 摸鑄以入。”

37) 노혁 왕지는 2009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공주의 명가」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조선초기 진사급제 왕지로 노혁이 진사 23인으로 입격한 왕지’라고 소개된 것은 조선초기 과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이 문서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8)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범우사, 1996), 74, 2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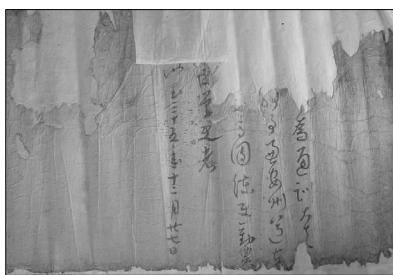
『世宗實錄』 18년(1436) 5월 25일, “議政府據禮曹呈啓: ‘今科舉等第, 竝依 『元典』, 文科則稱乙丙科同進士, 武科則稱一二三等. [...]’”

‘조선왕보’가 사용된 사례 중 가장 하한선에 위치한 것으로 불과 몇 개월 후인 6월부터는 명(明)으로부터 사여받은 ‘조선국왕지인’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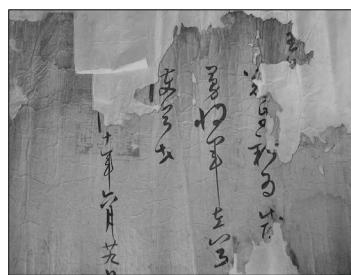
노혁 왕지는 제도적 측면과 문서 양식적 측면에서 모두 당시에 발급된 진본 왕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혁 왕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홍폐 가운데 발급 연대가 가장 이른 문서이자³⁹⁾ ‘조선왕보’가 찍힌 최하한에 위치한 문서로서 문서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8) 1402년 정유 왕지 및 1435년 정자신 왕지

전남 나주의 나주정씨(羅州鄭氏) 문중에 전래된 이 두 문서는 전래과정에서 훼손되어 문서명, 수취자, 발급일자 등의 주요한 정보가 군데군데 결락된 상태이다. 모두 초서체로 작성되었으며 붉은색 인문이 보인다. 이 문서에 대하여는 전형택이 설재서원(雪齋書院)에 소장중인 조선초기 나주정씨 고문서를 학계에 소개하면서 결락된 부분을 고증하였으며, 그 결과 정유(鄭有) 왕지는 1402년(태종 2)에 정유를 ‘통정대부 지성천군사 겸안주도좌의병마단련사 권농관학사’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이고, 정자신(鄭自新) 왕지는 1435년(세종 17)에 정자신을 ‘위용장군 좌군호군’으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임을 밝혔다.⁴⁰⁾ 아래의 도12의 정유 왕지에는 인문이 흐릿하게 남아 있는데, 발급 연도로 미루어 보아 ‘조선국왕지인’이 찍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도13의 정유 왕지는 인문이 일부 결락되었지만



도12-1402년 정유 왕지



도13-1435년 정자신 왕지

39) 이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1420년(세종 2) 이보정(李補丁)에게 발급된 ‘을과 제이인’ 급제 홍폐가 조선시대 최고(最古)의 홍폐로 알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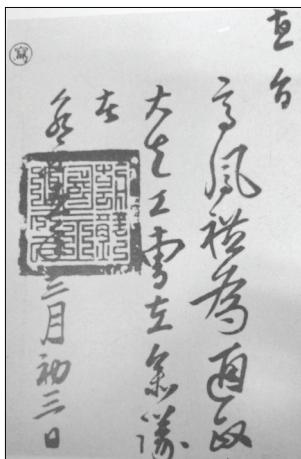
40) 전형택, 「설재서원 소장의 조선초기 나주정씨 고문서 자료」, 『고문서연구』 26(2005); 전형택, 「제1부 IV. 설재서원의 고문서 자료와 양반」,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도서출판 문현, 2010), 121-142쪽.

‘국왕행보’로 판독된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진본으로 판단된다. 특히 1435년 정자신 왕지는 조선시대 고신 가운데 왕지가 사용된 최하한에 위치하고 있으며, 1433년 이후 ‘국왕행보’가 사용된 실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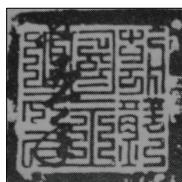
9) 1407년 고봉례 선지

『제주고씨대동보』에는 사본(寫本)으로 수록된 조선초기 문서가 한 점 수록되어 있다. 1407년(태종 7) 3월 초3일에 고봉례(高鳳禮)를 ‘通政大夫 工曹左參議’로 삼는 내용이다. 고봉례에 대하여는 『태종실록』 1407년(태종 7) 5월 8일 기사에 ‘右軍同知摠制’의 직을 부여한 내용은 보이나 ‘공조좌참의’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⁴²⁾ 사실 이 문서의 도판 좌측 상단에는 ‘寫’라는 표기가 있어 이 도판을 근거로 문서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기재된 발급연대가 조선초기이고 문서의 형식과 보인의 형태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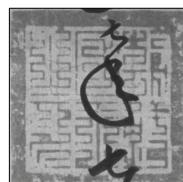
먼저 문서의 기두(起頭)에 ‘宣旨’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1407년(태종 7)의 문서 규식과 맞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왕언(王言)을 ‘선지’라



도14-1407년 고봉례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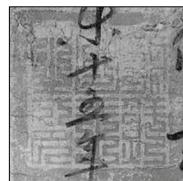
1407년 고봉례



1409년 정전



1414년 안성



1417년 전홍

41) 설재서원 소장 나주정씨 고문서는 2008년에 도난을 당하여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필자는 전형택 교수가 현지조사 당시 촬영한 도판을 토대로 나주정씨 고문서를 검토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42) 『太宗實錄』 7년(1407) 5월 8일, “以李貴齡爲參贊議政府事, 李龜鐵知議政府事, 朴子青 中軍都摠制, 高鳳禮右軍同知摠制. 子青出於黃希碩之步從, 以勤於營繕, 遂至顯擢.”

고 한 기록이 있고⁴³⁾, 조선초기의 경우에도 세종년간에 상왕(上王)의 명에 대하여 ‘선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있으나⁴⁴⁾, 왕언을 ‘선지’로 사용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문서에 찍혀 있는 ‘조선국왕지인’은 언뜻 보기에는 당시에 발급된 여타 문서의 ‘조선국왕지인’과 거의 유사하지만, 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획에 차이가 있다. 특히 ‘國’자와 ‘王’자에 획이 더해졌거나 빠진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문서가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의 근거가 된 원문서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10) 1415년 남재 왕지

이 문서는 1415년(태종 15)에 남재(南在)에게 발급된 왕지로 알려져 있고, 현재 후손가에 문서가 전하고 있다. 초서체로 작성되었고, 첨본(帖本)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15를 자세히 보면 문서에 보인의 흔적이 없고, 본문의 세로 행마다 외곽에 붉은색 테두리가 가늘게 그려져 있다. 이는 후대에 보관을 목적으로 첨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원본을 재편집한 것인지 아니면 전사본을 재편집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문서지(文書紙)에 보이는 발끈 흔적 등을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왕지’라는 글자가 기재된 행과 ‘南在爲純忠’이라고 적힌 2행 및 이후의 3·4행은 모두 원래 용지에 그대로 서사된 것이므로 이 문서는 처음부터 전사본이었고, 이 전사본을 다시 첨본으로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697년 남재의 후손 남구만(南九萬)이 지은 「忠景忠間兩先祖官教跋」에 당시까지 원본 형태로 전해졌던 남재 왕지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이 문서의 내용과 비교해볼 수 있다.⁴⁵⁾ 비교 결과 문서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 문서와 함께 이 집안에 전하고

43) 『高麗史』 세가(28) 충렬왕 원년(1275) 10월 13일, “[…] 王之末爲王也。不稱太子而稱世子。國王之命。舊稱聖旨。今稱宣旨。官號之同於朝廷者。亦其比也。[…].”

『高麗史』 세가(28) 충렬왕 2년(1276) 3월 19일, “甲申。達魯花赤詰之曰。稱宣旨。稱朕稱赦。何僭也。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解之曰。非敢僭也。但循祖宗相傳之舊耳。敢不改焉。於是。改宣旨曰王旨。朕曰孤。赦曰宥。奏曰呈。”

44) 『世宗實錄』 즉위년(1418) 8월 15일, “禮曹請以上王傳旨爲宣旨。其不從宣旨者。以制書有違諭罪。從之。”

45) 『藥泉集』, “右十代祖考忠景公官教一道 其文曰王旨 南在爲純忠奮義同德開國功臣大臣 輔國崇祿大夫宜寧府院君修文殿大提學世子傳者 永樂十三年九月二十一日 寶篆文曰朝鮮國王之印 [...]” (원문 출처: 한국고전종합DB).

있는 ‘남은유서(南閨遺書)’에 대하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전사본임이 언급된 바 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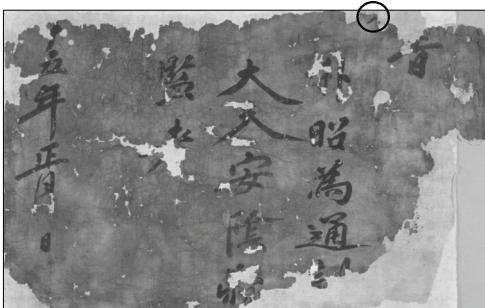
도15-1415년 남재 왕지

11) 1417년 박소 왕지[교지]

이 문서는 밀양박씨 후손가에 전하고 있으며, 문서의 상하 일부 글자가 떨어져나간 상태이지만 박소(朴昭)의 생존 연대와 관력을 상고하여 1417년(태종 17)에 발급된 왕지로 알려져 있다.⁴⁷⁾ 그러나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첫째 줄에 보이는 ‘旨’자의 좌상단을 살펴보면 왼쪽 아래로 내리 그어진 자그마한 필획이 하나 보인다. 이 필획은 1435년 이후의 고신 교지(教旨)에 보이는 ‘教’자의 왼쪽 아래로 내리 그은 필획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박소의 관력을 토대로 ‘교지’ 작성 규식에 맞추어 모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호 부분도 결락되어 있으나 원래 작성되었을 위치는 본문보다 상당히 위쪽으로 솟아 있는 형식이 되므로 이 또한 조선초기 왕지의 형식적 특징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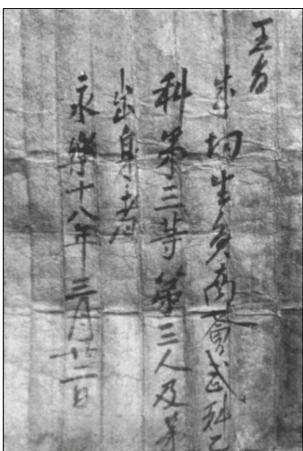


도16-1417년 박소 교지

46) 안승준, 「남은 유서의 고문서학적 검토」, 『고문서연구』 9·10합집(1996).

47) 『고문서집성』 제76권, 密陽 密城朴氏·德南書院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2) 1420년 남회 왕지



도17-1420년 남회 왕지

이 문서는 1420년(세종 2) 3월 22일에 성균생원 남회(南薈)가 ‘武科 乙科 第三等 第三人’에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이다.⁴⁸⁾ 도판으로는 보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1401년 노혁 왕지를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 과거제도를 근거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문서가 발급될 당시 무과 선발에는 갑과, 을과, 병과 등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⁴⁹⁾ 노혁 왕지

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1436년(세종 18) 5월 25일 실록 기사에 의하면 조선초기 무과는 문과와 달리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다. 이것은 15)에서 살펴볼 1435년 이임 왕지와 조서경 왕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420년에 무과 을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는 당시에 발급된 진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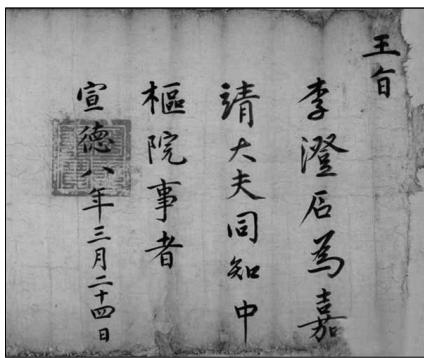
13) 1433년 이정석 왕지

이 문서는 1433년(세종 15) 3월 24일에 이정석(李澄石)을 ‘가정대부 동지중추원사’로 삼으면서 발급된 왕지이다. 해서체로 작성되었으며, ‘국왕행보’가 찍혀 있다. 실록의 동일 일자 기사에 이 문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⁵⁰⁾, 1433년 3월 2일부터 보인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 문서에 찍힌 ‘국왕행보’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1433년 3월 22일에 발급된 ‘이정석 교서(敎書)’에는 ‘국왕신보’가 찍혀 있어 동일한 왕명문서지만 문서의 성격에 따라 보인을 구별하여 사용한 사실을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8) 서수용, 『종가기행』(한국일보사, 2007), 41쪽. 저자는 이 문서를 인사동에서 실견하였다고 하며, 그 도판을 책에 수록해놓았다.

49) 윤훈표, 「조선초기 과거제도 연구」, 『학림』(1987), 32, 48-49쪽.

50) 『世宗實錄』 15년(1433) 3월 24일, “前摠制李澄石辭, 賦馬及弓矢, 仍以爲同知中樞院事.”



도18-1433년 이징석 왕지

그러나 이 문서 또한 해서체로 작성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해서체 고신 왕지들의 경우 진본 왕지라고 확인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록을 살펴보면 1432년 조정에서 고신에 초서체를 사용하는 것은 작명(爵命)의 뜻을 중히 여기는 취지에 맞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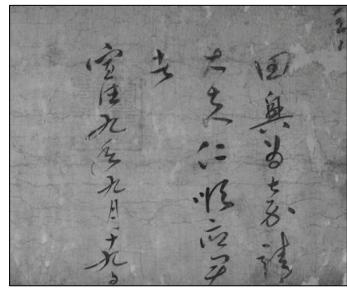
않다는 내용의 상소가 있었고⁵¹⁾, 이런 상소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 따라서 이징석 왕지의 경우에는 비록 해서체로 작성된 왕지이기는 하지만, 문서의 형식·내용·보인이 모두 당시 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시 초서체 고신의 논란에 대한 일시적인 반영의 한 사례일 것으로 판단된다.

14) 1434년 이정 왕지

이 문서는 1434년(세종 16)에 이정(李禎)을 '조봉대부 지한신군사 겸권농병마단련부사'로 삼으면서 발급된 것으로 초서체로 작성되었으며, '국왕행보'가 찍혀 있다. 전래과정에서 문서의 전단(前端)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이 문서의 전단부를 복원하면서 '교지(教旨)'로 파악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이 문서에 대해 교지 형식으로 발급된



도19-1434년 이정 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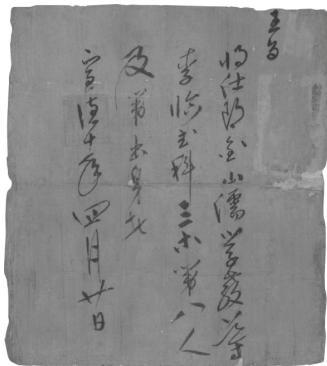
도20-1434년 전홍 왕지

51) 『世宗實錄』 14년(1432) 8월 21일, “大司憲申概等上疏曰: [...] 臣等又觀各品官敎, 用紙裂幅, 草書而降, 雖爲簡質, 恐非所以重爵命之義, 亦非盛代文明之制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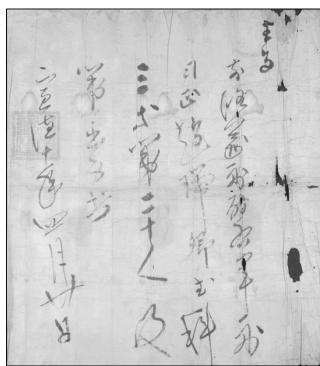
최초의 문서라는 의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⁵²⁾ 그러나 이 문서보다 5개월 후인 1434년 9월에 발급된 ‘전홍(田興) 왕지’, 1435년 6월에 발급된 ‘정자신(鄭自新) 왕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교지가 아니라 왕지로 발급된 것이다. 『세종실록』에도 1435년 9월 3일 기사에서 왕지라는 용어를 모두 교지로 통일시켰다는 내용이 보이고⁵³⁾, 현재 전하는 고신을 살펴보아도 예외 없이 이 실록 기사의 내용과 일치한다.

15) 1435년 이임 왕지 및 조서경 왕지

이 두 점의 문서는 1435년(세종 17) 4월 20일에 발급된 홍패로서 이임(李臨)은 ‘武科 三等 第八人’에 급제하였고, 조서경(趙瑞卿)은 ‘武科 三等 第二十人’에 급제하였다. 두 문서 모두 초서체로 작성되었고, ‘국왕신보’가 찍혀 있다. 이 왕지들은 당시 무과 선발제도에 부합하고, 보인 또한 ‘국왕신보’가 사용되어 문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현재 15세기 문서 가운데 무과급제 홍패는 이 두 점밖에 남아 있지 않고, 고신과 달리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 홍패에 찍힌 보인이 조선왕보 → (조선국왕지인) → 국왕신보 → (소신지보) → 과거지인 → 과거지보로 변화된 과정의 한 단계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도21-1434년 이임 왕지



도22-1434년 조서경 왕지

52) 『조선전기고문서집성』(국사편찬위원회, 1997); 『고문서집성』 제41권, 安東周村 眞城 李氏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53) 『世宗實錄』 17년(1435) 9월 3일, “吏曹啓 『續典』, 改判爲教, 改王(者)[旨]爲教旨, 而官 教爵牒及外吏正朝安逸差(貼)[帖], 仍稱王旨, 實爲未便, 請竝改以教旨.’ 從之.”

V. 맷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초기 왕지의 진위 검증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전하는 60여 점의 조선초기 왕지는 문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도를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문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데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역사학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강조된 것에 견주어보면 아직까지 조선초기 고문서에 대한 사료 비판은 소홀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종합되지 않았던 왕지의 현황을 목록화하고, 그에 대한 진위 판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통해 박강생 왕지, 고봉례 선지, 박소 교지, 남재 왕지, 남희 왕지는 진본이 아님을 언급하였고, 해서체 고신 왕지에 대해서는 진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 노혁 왕지, 정자신 왕지, 이정 왕지, 이정석 왕지, 이임 왕지, 조서경 왕지 등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와 보인의 정확성 등을 근거로 진본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문서사적 의의를 부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였다. 문서의 형식과 내용, 보인, 서체, 재질이 그것이다. 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조선초기 왕지의 작성 규식과 당시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보인은 왕명문서에 사용된 인장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체는 조선초기 고신 왕지가 대체로 초서체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해서체로 작성된 문서의 진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재질에 대한 문제 또한 검증 기준의 하나로 제시했을 뿐 이번 연구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서체와 재질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 분야의 보다 밀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http://sjw.history.go.kr>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http://db.history.go.kr>
- 『古文書集成』 제41권-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古文書集成』 제76권-밀양 밀성박씨·덕남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공주의 명가』 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2009.
- 김은미, 「조선시대 문서위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조선후기 교지위조의 일연구」.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159-186쪽.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술총서2, 2002.
- 박성종,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문서사적 의의 검토」. 『전북사학』 36, 2010.
-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31-68쪽.
-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古文書研究』 31, 2007, 107-129쪽.
- _____, 「예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서수용, 「종가기행」. 서울: 한국일보사, 2007, 41쪽.
- 성인근, 「조선시대 인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83-97쪽.
-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소와당, 2008, 119-134쪽.
- 안승준, 「남은 유서의 고문서학적 검토」. 『고문서연구』 9·10합집, 1996, 67-92쪽.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2007, 113쪽
- 윤훈표, 「조선초기 과거제도 연구」. 『학림』. 1987, 48-49쪽.
- 이종일, 「광주 양천허씨가의 고문서 연구」. 『향토문화』.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8.
- 전형택, 「설재서원 소장의 조선초기 나주정씨 고문서 자료」. 『고문서연구』 26, 2005, 1-20쪽.
- _____, 「제1부 IV. 설재서원의 고문서 자료와 양반」.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2010, 121-142쪽.
- 정구복 외, 「조선전기고문서집성」.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서울: 범우사, 1996, 74쪽, 253쪽.
- 川西裕也, 「『이재난고』 신축일력 소재 여말선초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2010, 187-209쪽.
- 최승희, 개정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1쇄)/2006(5쇄).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教文書様式の變遷」. 『朝鮮學報』 第205輯, 2007,
103- 124쪽.

국가기록유산, 문화재청 웹사이트, www.memorykorea.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웹사이트, <http://e-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 <http://yoksa.aks.ac.kr>
한국사DB,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웹사이트, <http://db.itkc.or.kr>

국 문 요 약

왕지는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에 사용된 왕명문서로서 현재 60여 점이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왕지는 작성 당시의 제도를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과 동시에 고문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왕지에 대한 엄정한 진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왕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문서의 형식과 내용, 보인, 서체, 재질이 그것이다. 문서 작성 규식과 당시 제도에 부합하는 내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발급 당시에 사용된 보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왕지를 작성할 때 적용된 서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서사재료의 성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박강생 왕지, 고봉례 선지, 박소교지, 남재 왕지, 남희 왕지는 진본이 아님을 언급하였고, 몇 건의 해서체 고신 왕지에 대해서는 진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외에 노혁 왕지, 정자신 왕지, 이정 왕지, 이정석 왕지, 이임 왕지, 조서경 왕지 등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와 보인의 정확성 등을 근거로 진본임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문서사적 의의를 부가하였다.

투고일 2010. 6. 21.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0.

주제어(keyword) 왕지(document from the king), 문서형식(formalities for official documents), 보인(royal seal), 서체(a calligraphic style), 해서체(the printed style of writing), 재질(quality of the material)